대만 비관세장벽이슈



Taiwan Non Tariff Barriers Issue

대만, 식품 내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발표 (2024년 7월 1일 시행)



영유아용 식품, 견과류, 초콜릿, 동물류 내장 등 다양한 식품에 오염물질 및 독소 위생기준 개정

2023년 11월 13일,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 중 중금속 오염물질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「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 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(제1111300972호령)」에서 제3조 부록 1과 제6조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을 수렴함

- 1. 배경: 대만은 「식품 중 오염물질 및 독소에 대한 위생기준」을 통해 식품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지 않은 오염물질의 식품 잔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. 구체적으로 해당 규정은 제 3조의 부록 1을 통해 식품의 중금속 한도, 제 4조의 부록 2를 통해 곰팡이독소 한도, 제 5조의 부록 3을 통해 기타 오염물질 및 독소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. 대만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조의 부록 1에 대해 영유아용 식품, 가금류 내장, 견과류 등 여러 품목의 중금속 잔류 기준과 품목별 잔류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각품목의 정의를 개정 및 신규 제정함. 본 법령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임
- 2. 중금속 잔류 한도(제 3조 부록 1) 개정 내용(각 품목별 구체적인 정의와 그 변동사항에 관한 내용은 원문 표 하단 참조)

중금속	기존 규정		변경 규정	
	품목	잔류 기준(mg/kg)	품목	잔류 기준 (mg/kg)
납	소, 양 돼지 가금류의 식용 내장	0.5 ª	소, 양의 식용 내장	0.2 a
			식용 돼지 내장	0.15 a
			식용 가금류 내장	0.1 a
	영아용 조제분유 및 성장기용 조제분유	0.050(분말 형태 판매) ^b	영아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유아용 조제분유	0.020(분말 형태 판매) ^b
	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의 유아용 조제분유	0.050 ^b	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 조제분유 및 특수 의료 목적 의 유아용 조제분유	0.020 ^b
	이 표의 <u>210.1, 2102 및 2.10.3*</u> 항목에 있는 <u>액체 형태 제품</u> 을 제외하고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음료	0.030 ^b	이 표의 <u>210.1 및 2.10.2**</u> 에 따른 액상 제품 을 제외하고 영유아용으로 표시 및 판매되는 음료	0.020 °

- (a) 신선/습식 중량기로 측정함
- (b) **판매 형태**를 기준으로 적용됨
- (c) 액체 형태로 판매되거나 라벨 지침에 따라 음용으로 준비된 제품에 적용됨



~ J ^	기존 규정		변경 규정		
중금속	품목	잔류 기준(mg/kg)	품목		잔류 기준(mg/kg)
	대두, 땅콩	0,2 ª	견과류, 유지종자, 대두	잣	0.3
				기타견과류	0.2
				대두와 땅콩	0.2 ª
				유채씨	0.15
				겨자씨	0.3
				아마씨와 해바라기씨	0.5
카드뮴				기타 유지종자	0.1
			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(대두 단백질 제외)을 단독 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		0.010(액상) ʰ
		-			0.020(분말) ^b
	-	-	이 표의 3.6.1, 3.6.2 및 3.6.4*** 항목에 해당하는 액상 조제 제품 을 제외한 영유아용 음료의 라벨링 및 판매		0.020 ^c
	-	-	초콜릿(총 코코아 고형분 함유량이 50% 이상 70% 미만)		0.8
	æ	=	초콜릿(총 코코아 고형분 함유량 70% 이상)		0.9
수은	수생동물 (어류)	하위 품목별 잔류 기준 존재	수생 동물(어류)		하위 품목별 잔류 기준 존재 ※ 총 수은 시험 결과가 메틸수은 한계치 이하인 경우에는 메틸수은 농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

^(*) 영유아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/유아용 조제분유, 영유아용 곡물기반식품, 영유아 보조식품(곡물기반식품 및 우유 기반 음료 제외) (**) 영유아용 조제분유, 성장기용 조제분유, 유아용 조제분유, 특수 의료 목적의 영아용/유아용 조제분유

3. 시행일: 2024년 7월 1일

한국 식품 기업, 식품 수출 시 변경된 대만의 중금속 잔류기준 확인하여 준비 필요

한국은 <u>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에 대한 카드뮴 한계 0.3mg/kg</u>, <u>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, 성장기용 조제식, 영유아용 이유식, 영아용 조제식에 납 한계 0.01mg/kg(분말 제품의 경우 제품의 지침에 따라 섭취 형태로 희석한 것을 기준)로</u> 설정하고 있음. 개정된 대만의 영유아용 식품의 납 잔류기준은 모두 한국의 기준보다 높으나, 제품 수출 시 <u>판매되는 형태에 잔류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납 잔류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함.</u> 또한 대만으로 견과류, 영유아용 제품, 초콜릿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카드뮴 잔류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

출처

衛生福利部,預告「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」第6條及第3條附表1修正草案,2023.11.03 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,預告修正「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」第六條及第三條附表一,2023.11.13 全國法規資料庫,食品中污染物質及毒素衛生標準,2022.07.06

^(****) 우유 단백질, 단백질 가수분해물, 또는 분리 대두 단백질을 사용한 영아용/성장기용 조제분유와 유아용 조제분유 중 식물성 단백질(대두 단백질 제외)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우유 단백질과 혼합하여 만든 분유